

## ○○중 통근버스 입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 [2심]	사건유형	손해배상(국)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판결선고일	2024. 7. 19. 항소기각	비고	[1심] 2022. 5. 18. 원고패(교육감승) [2심] 2024. 7. 19. 항소기각(교육감승)
사건개요	<p>○ 원고는 관광버스 전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 ○○중학교는 2022. 2. 9.경 나라장터에 '2022학년도 ○○중학교 교직원 통근버스 임차용역 전자입찰 공고'를 게재하였고, 개찰결과 원고와 소외 △△△관광이 동점으로 1위에 낙찰됨. 피고 소속 ○○중 입찰집행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낙찰자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중은 원고와 △△△관광에게 2022. 2. 21. 10:30에 ○○중 3층 도서관에서 현장투표로 최종낙찰자를 정한다는 공문을 보냄. 현장투표 당일 △△△관광이 투표시각이 임박하여 10분 정도 늦음을 양해를 구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은 이를 양해하였으나, △△△관광은 투표시간이 지난 10:42경 ○○중 행정실에 도착하였음. 이에 황○○은 상대업체가 투표시각에 늦었으니 당연히 원고가 최종낙찰자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입찰집행관이 현장투표를 진행하여 △△△관광에게 먼저 뽑기할 기회를 주었고, 이에 △△△관광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됨.</p> <p>○ 원고는 피고 소속 ○○중학교의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입력 시 규정을 위배하여 내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나라장터 시스템 상 '동일가격추첨'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이후 수기로 실시한 현장 투표과정에서도 참가 시간에 늦어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의로 자격을 부여하여 참가하게 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로 원고가 입찰에서 탈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직원인 ○○중 입찰집행관의 위법한 행위로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소를 제기함.</p>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및 2심 판결요약	<p>○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p> <p>○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산에 입력된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라 입찰공고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p> <p>○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으로서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현장추첨이</p>		

	<p>아닌 자동추첨 절차에 의하여야만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고 행정안전부의 사실조회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추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추첨도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에 따라 현장추첨 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p> <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2절 17. 바.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가나다관광은 다소 늦게 도착하였을 뿐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가나다관광이 늦게 도착한 이후 함께 현장추첨 절차를 진행함. 가나다관광이 늦게 현장추첨 장소에 도착하여 입찰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p>
<p><b>결 론</b></p>	<p>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함.</p>